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[고성미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77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고성미 의원

찬 성 자 : 고영찬, 도병두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'22.4.26. 제정, '23.4.27. 시행)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.
- 나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).
- 다.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경비 지원·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안 제7조).
- 라. 지도 및 점검·환수·표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4. 2. 5. ~ 2. 13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금천구 자율방범대”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금천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금천구 자율방범연합대”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란 방범대가 연합

하여 구성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
3. “자율방범대원”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
2.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
3.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
4.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절차 등)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

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
2. 방법대 및 연합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법대원 명단
3. 방법대 및 연합대의 정관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중단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3.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방법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방법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정산)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

서류를 순찰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
2. 방법활동 순찰일지

제8조(지도 및 점검) 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·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·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환수)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법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표창)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이 경우 표창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{0000년 (0~0월) 지원금 신청서}**

(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)

1. 사 업 명 :

2. 사업내용 :

※기간, 장소, 사업내용 등 기재

3. 추진계획 :

4.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항목	계	신청금	산출내역
계				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지원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장

(인)



**[0000년 (0~0월) 지원금 정산서]**

(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)

(단위: 원)

수령액	집행액	잔액	비고

**[실비 세부 집행내역]**

(단위: 원)

일 자	수령액	지출액	내 용	잔 액	비 고
합계					

※ 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장이 대표로 작성하고 증빙영수증 및 순찰일지 첨부

년 월 일

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장 (인)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6.01.0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46호, 2016. 01. 05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금천구의 범죄 없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, 부녀자 및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금천구에 등록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”(이하“자율방범대”라 한다)라 함은 지역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며 구에 설립·등록된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구성 및 활동)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율방범대는 대장, 부대장, 총무 및 대원(이하“자율방범대원”이라 한다)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.

제4조(임무)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 및 범죄신고
2. 청소년 선도·보호 및 미아·기아·가출인 보호
3.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

4.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
5.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신고 등) ① 자율방범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자율방범대의 대표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6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방범대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과 관련된 순찰비, 장비구입비, 피복비, 야식비,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비 등과 구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차감 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

3.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

4.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 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

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자율방법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연간 2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평가·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)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법대원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법대원 및 모범자율방법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(제846호, 2016.1.5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4. 27.] [법률 제18848호, 2022. 4. 26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대원”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자율방범대장”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 및 구성 등) ① 자율방범대는 읍·면·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구·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, 부대장, 총무 및 대원을 둔다.

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신고)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, 활동구역,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1)·2)·3)·7)·8)·9)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

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)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(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

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“자율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3. 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“시·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4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제8조(복장·장비 등)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, 복장,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시·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한다.

제10조(교육·훈련) ① 시·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포상)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설립 등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, 연합회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,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, 연합회 및 연합대(이하 “중앙회등”이라 한다)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중앙회등의 지도·감독)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, 시·도경찰청장은 연합회,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·감독한다.



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금지의무)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
2.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3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② 자율방범대·중앙회등(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)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8조(별칙)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

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
제19조(과태료)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칙 <제18848호, 2022. 4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, 중앙회,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, 중앙회,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.